



■ 문의처 :

○ 가입상담 :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부 (02-2124-3271~3273), 중앙회 각 지회, 기업은행 전국영업점,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 
 ○ 대출상담 : 대출부(02-2124-3281~3286),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회

■ 지원내용 :

- 공제기금 가입
  - 대상 :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
  - ※ 담배·알콜음료 중개업 또는 도매업, 주점업, 댄스홀·댄스교습소, 도박장 운영업,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, 기타 중앙회장 인정업종은 제외
  - 가입방법 : 중앙회와 공제계약 체결(방문 및 팩스 가능)
  - 가입서류 : 가입청약서(본회 소정양식), 중소기업은행의 보통예금 또는 기업자유예금통장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주민등록증 사본
  - 월부금 종류 : 10만원 단위로 100만원까지
  - 월부금 만기 : 3년 6개월(42회), 부금만기후 미해약시 3개월마다 소정의 만기부금 이차 지급



■ 문의처 :

중소기업청 기업진흥과(02-503-7930), 각 지방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부

- 지원규모 : 1조원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할 것
  - 북한진출 중소기업
- 지원범위 :
  - 시설자금 : 생산성 향상, 지식기반 산업육성, 정보화를 위한 시설자금
  - 중소기업이 생산설비를 구입·개체하거나,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스템 및 설비를 구입·개체하는 경우 소요자금
  - 운전자금 : 초기 가동비
  -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(시설자금의 30% 이내)

○ 공제기금 대출

- 대출자격 : 가입후 6개월(7회차) 이상 부금 납부한 자
- 대출절차 : 대출신청(공제사업단 또는 각 시·도 지회) ⇒ 대출심사 및 대출(한도)금액결정 ⇒ 대출약정 ⇒ 대출금 송금

■ 대출종류 및 규모 :

- 부도어음대출(제1호공제금대출) : 부금잔액의 10배 이내
- 어음및가계수표대출(제2호공제금대출) : 부금잔액의 10배 이내
- 단기운영자금대출(제3호공제금대출) : 부금잔액의 5배 이내
- 공동구판매사업 자금대출 : 조합자기자본의 10배 이내

■ 지원조건 :

- 부도어음 대출 : 이율 - 대출금의 1/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
- 어음및가계수표대출 : 이율 - 신용등급별로 6.25%~8.25%

○ 구조조정지원자금 : 기업간 인수·합병을 추진하는 경우 인수가액, 다른 기업이 보유중인 생산설비를 이양받는 경우 동 가액 등 기업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

- 중소기업이 제조업, 제조업관련서비스업으로 사업 전환하는 경우 소요되는 시설자금

■ 지원조건 :

- 대출금리 : 5.9%(변동금리)
- 대출기간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포함)
- 대출한도 : 소요자금의 100% 이내로 업체당 연간 총 20억원 이내(다만 장치산업의 경우 30억원까지)



■ 문의처  
중소기업청 자금지원과(042-481-4377),  
각 지방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진흥공단  
각 지역 본부

- 지원규모 : 2,000억원
  - 일반경영안정자금(1,700억원)/특별경영안정자금(300억원)
- 지원대상 :
  - 일반경영안정자금 :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(전업을 30% 이상)하는 중소기업, 북한 진출 중소기업
  - 특별경영안정자금 : 제조업, 제조업 관련, 서비스업,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기업(전업을 30% 이상)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, 최종 부도 발생 기업, 금융기관·신용보증기관 등의 신용불량 기업, 화의·법정관리 진행 중인 기업 등
- 지원범위 : 원부자재 구입, 경영·기

술혁신, 기술도입 및 사업화, 국내외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, 재해,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
- 지원조건 :
  - 일반경영안정자금
    - 금리 : 연 5.9%(변동금리)
    - 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  - 한도 : 업체당 연간 5억원 한도
  - 특별경영안정자금
    - 대출금리 : 7.9%(변동금리)
    - 대출기간 : 3년 이내(거치기간 1년 포함)
    - 대출한도 : 업체당 연간 10억원



■ 문의처 : 중소기업청 소기업과(02-503-7925)

- 지원규모 : 3,750억원
- 지원대상 및 조건 :
  -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
    - 대상 : 제조업(전업을 30% 이상), 유통업, 건설업,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    - 범위 : 공장·부지매입비, 시설도입·개체자금 및 건축소요자금, 연구개발비 등
    - 금리 : 연 5.9%(변동금리)
    - 기간 : 시설자금(8년, 거치기간 3년 포함), 운전자금(3년, 거치기간 1년 포함)
    - 한도 : 시설자금(10억원), 운전자금(3억원)
  - 지역특화품목 생산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사업
    - 대상 : 지역특화품목관련조합(단체),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, 지역특화품목 생산 및 특별지원지역 입주(예정)중소기업

- 범위 : 지역특화품목관련 기술, 디자인, 소재개발, 전시·판매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시장재개발 사업
  - 대상 : 시장을 재개발·재건축 또는 이전하여 신축하는 사업자
  - 범위 : 재개발·재건축 사업자금(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·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), 임시시장 설치자금(시장 재개발·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임시시장 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건물의 임차비)
  - 금리 : 연 5.9%(변동금리)
  - 기간 : 재개발·재건축 사업 자금(15년 이내, 거치기간 5년 포함), 임시시장설치자금(8년, 거치기간 3년 포함)
  - 대출한도 : 재개발·재건축사업자금(100억원), 임시시장설치자금(5억원)